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운영 지침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솔루엠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대금지급 등의 하도급거래 적법성을 사후 검증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 및 사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심의 대상

- (1)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심의 : 기존 협력업체 가격 변동사항 및 30억 이상 계약체결사항
- (2) 신규업체 등록, 계약체결,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심의
- (3)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심의
- (4)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사항 심의 및 조정
- (5)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대금지급,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한 전가 등
- (6) 기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활동 및 동반성장 지원방안 등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2)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 (3)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5)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6) 필요시 관련 협력회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7)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4. 심의 내용

내부 심의위원회는 솔루션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협력회사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예시.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1)항의 심의대상 하도급 협력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기본 계약서 작성,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가격결정 등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전 심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다.

<사전 심의 사항>

-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⑦ 부당한 특약 조건 설정 금지 위반여부

2) 업체 등록 심의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 ① 하도급거래 협력사(신규등록 협력사 포함)에 대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
- ②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시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운영지침 준수여부를 검증한다.
- ③ 하도급거래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등을 심의한다.

3)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사항

솔루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안이나 협력사로부터 혹은 내부 보고로 접수된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 및 조정하고 확인된 문제는 자진 시정 및 이행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법무그룹의 지원과 조언을 받는다.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4)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① 검증대상 및 검증시기

- ㉠ 등록 취소 등 계약해지·해제 협력사: 계약종료 시
- ㉡ 거래중인 협력사: 월1회 (월 마감 후)

② 검증사항

다음의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해 그 적법성을 사후 검증(모니터링)하고 시정한다.

- ㉠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완료 여부
- ㉡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 ㉢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발생 여부
- ㉣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 발급 서면 보존 및 관리사항 등

5) 기타 하기의 사항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한다.

부당반품 및 위탁취소 여부,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여부,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여부 등

6) 기타 동반성장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협력사 동반성장 정책 방향 설정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한다.

5. 사후 관리

(1)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오프라인 회의록(온라인 회의록 포함)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2)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